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04 발의연월일: 2024. 1. 9.

발 의 자:윤건영·김주영·박해철

박정현 • 백승아 • 강준현

이광희 • 박홍배 • 신장식

용혜인 • 양부남 • 이해식

박성준 • 김한규 • 김준형

김원이 · 임호선 · 이재관

민병덕 • 이정헌 의원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자의 경우와 달리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 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

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무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회주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

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공무원의 봉급[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률
- 2. 공무원의 보수(제1호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공무원의 호봉, 승급,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
 - 1.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무원위원"이라 한다) 9명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9명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공무원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④ 정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2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1명
- 2.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명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1명
- 4.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5.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6.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7.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
- ⑤ 공익위원은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임명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공익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정부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국무총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국회사무총장, 법 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주무장관등"이라 한다)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공무원위원이 3분의 1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심의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3명 이하 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 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항을 준용하며, 이 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 회의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 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연구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정한 품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① 기획재정부장 관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 내용 등을 반 영한 공무원 보수안(報酬案)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수안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심의·의결 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보수안의 시행을 위한 조치) ① 주무장관등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지체 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주무장관등은 제1항의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필요한 제반(諸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장관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법률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